서울특별시 저층주가지 잡수리 자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의안 번호 381

2019. 2. 28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

1. 제안경위

○ 2019. 1. 31. 이상훈 의원 발의 (2019. 2. 7 회부)

2. 제안이유

저층주거지의 집수리 사업을 활성화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성능개선구역을 신규 도입하고, 집수리 지원의 대상범위와 규모 를 주택성능개선구역 내외로 구분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주택성능개선구역의 지정 대상지역을 정함(안 제2조 및 제6조).
- 주택성능개선구역 내/외 지역에 대해 행·재정적 지원범위를 정함 (안 제7조)
- 집수리 공사비용의 보조 및 융자 범위를 정함(안 제9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해당없음

나. 예산조치 : 별첨(비용추계서)

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□ 제출배경

○ 이 개정조례안은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'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'을 신규 도입하고, 집수리 지원범위를 확대 및 명확히 하여 집수리 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이상훈 의원이 발의하여 2019년 2월 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됨.

□ 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검토사항

첫째, 집수리사업 지원 대상지역 및 지원내용 확대(안 제2조, 제6조, 제7조)

○ 서울시(도시재생실)는 현재 집수리 사업을 도시재생활성화지역(근린재생일 반형)내에서 시행하는 "서울가꿈주택 사업"과 "저층주거지 주택개량 지 원" 사업으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음. "서울가꿈주택 사업"은 「도시 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1)과 관련 조례2)에 따라 도시재

^{1) 「}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7조(보조 또는 융자)

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.

^{1.}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비

^{2.} 도시재생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 · 연구비

^{3. &}lt;u>건축물 개수·보수 및 정비 비용</u>

^{4.} 전문가 파견・자문비 및 기술 지원비

^{5.}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

^{6.} 도시재생지원기구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비

^{7.} 문화유산 등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

^{8.} 마을기업,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,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지역활성화사업 사전기획비 및 운영비

^{9.}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

^{10.}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 ·물건 및 권리 취득에 필요한 비용

생활성화지역내 건축물의 개·보수 및 정비, 기반시설의 설치·정비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이며(별침 1), "저층주거지 주택개량 지원" 사업은 「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실행계획」(행정2부시장 방침 제347호, '15.10.13)과 이 조례³⁾('16. 1.제정·시행)에 따라 일반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융자 및 이차보전해 주는 사업임.

구 분	가꿈주택사업	저층주거지 주택개량 사업				
대상지역	도시재생활성화지역(근린재생일반형) 내 20년 이상 경과한 저층주택	도시재생활성화지역,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,일반 저층주거지역내 저층주택이 밀집한 주거지 111㎡				
사업내용	개별주택 집수리(대수선, 수선, 건축물 성능개선공사 등), 기반시설 정비 등					
	보조, 기반시설정비(시설비)					
지원사항 		융자 또는 일정범위내 이자지원				
지원사항	, - , - 0 , 0	융자 또는 일정범위내 이자지원				

○ 이 개정조례안은 집수리 사업 지원 대상을, 현행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이외에도 정비구역 해제지역 등 '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'(이하 "지원구역")으로 확대하려는 것임. 지원구역은 금번 새로이 도입하는 제도

^{11.}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^{2) 「}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3조(재정지원)

①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, 범위 및 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

②~④ (생략)

³⁾ 제6조(집수리 지원사업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집수리 지원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수 있다.

^{1.} 집수리 종합정보 제공 시스템의 구축 · 운영

^{2.} 집수리 공사비의 지원

^{3.} 저층주택 관리이력제의 도입 및 운영

^{4.} 집수리 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

^{5.} 그 밖에 저층주거지 거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

로서 △도시재생활성화지역 △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, 건축물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저층주택이 60% 이상으로서, △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 △정비구역 해제지역 △경관지구 및 고 도지구 △골목길재생지역 가운데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하는 구역 등을 말하는 것으로,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근 거의 명확화로 집수리사업을 활성화 하고자 하였음.

여기서, '골목길재생지역'을 지원구역 지정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금 번 회기에 우리위원회에 상정·심의 예정인 「서울특별시 골목길재 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(의안번호 396)」과 연계하여 골목 길 재생지역에서 골목길 정비와 집수리 사업도 병행 추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그 필요성이 인정됨.

구분	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	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외 지역
대상 지역	- 도시재생활성화지역 -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* -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* - 건축물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된 저층 주택이 60% 이상으로서 다음 지역 중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하는 구역 :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 : 정비구역 해제지역 : 경관지구 및 고도지구 : 골목길재생지역 : 자치구청장이 요청하는 구역	일반 저층주거지
비용지원 사항	공사비 보조 및 융자기반시설비용 지원	- 공사비 융자 또는 이차보전

^{*)}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·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

- 공사비 지원(안 제7조)과 관련하여 지원구역과 그 외 지역을 구분하여 지원내용을 달리 정하고 있는 바, 지원구역 안에서는 집수리 비용보조 및 융자와 기반시설비용 지원을, 그 외 지역에서는 융자 또는이차보전만 가능하도록 차별화한 것은 정비구역 해제지역과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등 노후화된 저층주택이 집단으로 밀집되어 있는지역과 경관지구와 고도지구 등 건축제한으로 정비사업에 한계가있는 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·강화함으로써 주거환경개선사업의효과 제고 및 사업의 확산, 그리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그 목적이었다 사료됨.

둘째, 공사비 지원범위 확대(안 제9조)

- 현행 조례는 공사비의 80% 범위 내에서 융자 지원할 수 있도록 공사비 지원 비율을 정하고 있으나,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원구역에만 지원 가능한 공사비 보조 범위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정하고(안제7조), 지원의 세부기준은 시장이 정하도록 하였음.
- 지원대상과 지원범위의 확대는 필요하다 사료되며, 지원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담당부서별로 별도 추진하는 집수리 사업과 골목길재생관련 사업 지원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겠음. 또한, 추후 지원금의 한도, 지원방법 및 지원조건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 판단됨.

<저층주거지 주택개량 지원 사업의 지원 기준>

	5	E시재생시	P업구역	(저리 원	}자)	일반 저충주거지역 (이자 지원)				
구분		집수리	신축				집수리	신축		
	단독	다가구	다세대	단독	다가구	단독	다가구	다세대	단독	다가구
한도	6천만	3천만 (최대 4호)	3천만 (세대당)	1억	5천만 (최대 4호)	ll .	3천만 (최대 4호) , 뉴타운 ⁹ 금액의 1		- 1억	5천만 (최대 2호)
금리	연 0.7%)	시중금리 ((市, 금리:	의 2.0%보	조)
상환		3년 거치	10년 균	등분할성	}환	5년 균등분할상환				
조건				융자기	기간 중 1회어] 한하여	임대료 동	결		

(출처: 주거환경개선과 내부자료)

셋째, 집수리 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(안 제11조)

-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(이하 "재생센터") 등에서 집수리 공구대여 등 집 수리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나, 집수리 사업 지원대상과 지원범위가 확 대됨에 따라, 집수리 지원센터(중앙 및 지역 센터)를 별도로 설치·운영 하여 저층주거지 거주민에게 집수리 지원서비스 제공 및 사업의 통합 관리, 마을단위 주택 진단과 상담 등 패키지 지원, 현장기술 지원 등 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됨.
- 다만, 현재 재생센터에서 집수리 지원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만큼, 기존 재생센터를 활용하는 방법, 기존의 재생센터와 중복되지 않는 공간설치 등 다각적인 설치 방안을 검토하고, 추후 집수리센터의 기능과역할, 운영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다 사료됨.

담 당 자	도시계획관리위원회			
	입법조사관 임경숙			
연 락 처	02-2180-8205			
이 메 일	일 kslimga@seoul.go.kr			

별첨1

서울가꿈주택 사업 추진실적

□ 가꿈주택 개별주택 집수리

	구분	합계	창신 숭인	상도4	장위	성수	가리봉	해방촌	암사	신촌	수유1	창3	불광2	천연 충현	난곡 난향	묵2	서계동
	1 4	ם י יו	종로	동작	성북	성동	구로	용산	강동	서대문	강북	도봉	은평	서대문	관악	중랑	기타
	신청건수	149	82	22	30	11	2	1	1	_							
16	선정건수	31	8	9	11	3	_	_	_	_							
	지원건수	14	2	1	8	3	_	_	_	_							
	신청건수	131	16	17	53	1	23	5	14	3							
17	선정건수	52	5	6	27	_	5	3	6	_							
	지원건수	32	2	4	17	_	3	1	5	_							
	신청건수	128	7	7	14	_	19	3	18	_	9	10	14	1	10	3	13
18	선정건수	44	1	1	6	_	2	2	3	_	6	2	4	-	4	_	13
	지원건수	38	1	1	6	_	2	1	3	_	5	1	4		2	_	12
합계	지원건수	84	5	6	31	ı	5	2	8	_	5	1	4	_	2	_	12

□ 장위동 서울가꿈주택 기반시설(골목길) 정비 추진 사례('17. 6. ~'18. 7. 20)



□ 예산 집행 및 편성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예산과목	'18년	예산	'19년 예산			
(사업내용)	예산현액	집행액 (집행률)	본예산	예산현액	집행액 (집행률)	
계	1,050	833 (80%)	7,455	7,455	_	
사무관리비 (전문가 지원수당, 홍보비 등)	60	58 (97%)	187	187	_	
민간경상사업보조 (집수리 비용 지원)	400	272 (68%)	4,768	4,768	_	
시설비 (설계비 및 공사비 등)	590 (이월)	503 (85%)	2,500	2,500	_	

별첨2 저츙주거지 주택개량 지원 실적

□ 도시재생사업구역 내 주택개량 융자지원 총괄(단위:첫위)

연도	2012년	2013년	2014년	2015년	2016년	2017년	2018년	합계
융자금액	31,120	730,844	1,106,251	514,907	1,074,810	1,482,560	623,700	5,564,192
지원건수	1건	13건	19건	19건	39건	52건	23건	166건

□ 일반저층주거지역 주택개량 이차보전지원 총괄(단위:천원)

구분	예산	건수	융자실행금액	이차보전금액	비고
15년	150,000	30	684,362	3,496	
16년	150,000	50	924,030	16,394	
17년	37,500	33	511,600	27,409	
18년	37,500	19	561,211	24,373	`18년 신청 : 30건
누적 계	375,000	132	2,681,203	71,672	

■ 사업별 지원현황(조사기간 : `12.1.1 ~ `18.9.)

 연도	도사째	알ੁੱਨ ਨ ੇ?자(2%)		
<u> </u>	주 환경만시업	도사재별상화사업		
12년	1	0	0	
13년	13	0	0	
14년	19	0	0	
15년	19	0	30	
16년	13	26	50	
17년	22	30	33	
18년	8	15	19	
계	95	71	132	